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350회 임시회  
2016. 8. 30.(화)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3.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8월 19일
- 회부일자 : 2016년 8월 22일

3.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48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종료('16.12.31.)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17.01.01.~'19.12.31.)
- 위 치 : 충청북도 소재
- 수탁기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자  
※ (현)수탁기관 : (사복)어린이재단(관장 '15.11.16~'16.12.31)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 업 비 : 319백만원(도비 100%) ※ 연도별 변동가능
- 위탁 주요사무
  -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이동에 대한 상담
  -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관리,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정보 제공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 단, 위탁 전 관련조례 개정의 경우 위·수탁협약은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 4. 검토의견

### ○ 법적 근거 및 동의안의 내용

-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와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제6조·제7조에 따라 민간전문기관에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 동 시설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정함.

### ○ 종합의견

- 가정위탁 사무는 질병, 학대 등 심각한 문제로 친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건전한 가정에 위탁 양육하게 하여 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정서를 함양 시키고 인격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아동복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사무의 특성상 가정위탁을 위한 위탁보호가정 발굴, 신청 가정 및 대상아동의 조사, 위탁보호가정의 사후관리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런 노하우를 지닌 민간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은 타당함.
- 또한,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세심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 후에도 수시 지도 점검으로 위탁가정에서 성장·생활한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기관명	주 소	연락처	수탁기관	비고
18개소				
중앙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19, 원빌딩 2층	(02)796-1406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	
서울	서울시 양천구 화곡로 47, 어린이재단 양천별관 1층	(02)325-908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685, 영동빌딩 9층	(051)758-8801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	
대구	대구시 서구 달구벌대로 375길 9-1, 2층	(053)656-2510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인천	인천시 부평구 경원대로 1415, 가나파라움빌딩 304호	(032)866-122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52, 한림빌딩 5층	(062)351-120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4호	(042)242-5240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울산	울산시 남구 중앙로 216 안강빌딩 4층	(052)286-1548	굿네이버스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14번길 9, 서림프라자빌딩 7층	(031)234-398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 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35, 304호 (의정부동미림프라자)	(031)821-9117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강원	강원도 원주시 라웅정길 51-1, 그린빌딩 3층	(033)766-140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5, 프리벨빌딩 3층	(043)250-122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0길 8, 희망빌딩 4층	(041)577-122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 천동로 483, 전북사회복지회관 2층	(063)276-260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	전남 목포시 옥암로 108, 바다빌딩 5층	(061)279-1225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	경북 경산시 경산로 139, 2층	(053)813-3953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경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 한마음타워 5층	(055)237-122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22, 3층	(064)747-3273	(사)제주상담상터	

## 관련규정 발췌

### □ 「청소년기본법」

-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아동상담소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나. 별표 8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 기준을 갖추는 것

다. 별표 10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추는 것

라.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아동복지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45조제2항 및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군별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군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업무)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
5.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려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려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려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제7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법 제4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